#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103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송재봉 • 이기헌 • 박홍배

김동아 · 김남근 · 김우영

황명선 • 전종덕 • 이수진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수탁기업협의화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수탁기업에 약정 갱신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 및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둠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 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나. 수탁기업협의회가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수탁기업협의회가 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라.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이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 마.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

사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수탁기업협의회는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⑤ 수탁기업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

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익을 침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82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4(약정의 갱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기간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수탁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조건을 수탁기업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기업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탁기업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수탁기업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약정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의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다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기업이 약정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 중 "기관에"를 "기관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탁·위탁거래감독관에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탁·위탁거래감독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 기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을 둔다.

② 수탁 · 위탁거래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

- 다. 수탁 · 위탁거래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수탁·위탁거래감독관에게 통보할 수있다.
- ④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공무원"을 "수탁·위탁거래감 독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24조의4"를 "제24조의4 또는 제27조의2제2항"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성 된 수탁기업협의회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약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생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업협의
		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u>같다.</u>
<u>&lt;신 설&gt;</u>		③ 수탁기업협의회는 구성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
		정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
		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
		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u> &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
		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u> &lt;신 설&gt;</u>		⑤ 수탁기업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그 목
		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신 설>

② · ③ (생 략)

법률 제1982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 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u>⑦</u>· <u>⑧</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법률 제1982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4(약정의 갱신 등)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속적 수 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 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수탁·위

탁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약 정"이라 한다) 기간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 정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탁기업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수탁기업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조건을 수탁 기업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공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기업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위탁기업이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탁기업에게 거절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3의2. (생 략)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u>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u> 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약정 기<u>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u> 까지 사이에 수탁기업에게 조 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약정 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의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다 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기업이 약정이 만료 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 를 제기하거나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준수사항) ①	
1. ~ 13의2. (현행고	과 같음)
1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 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 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u>기관에</u> 고 지한 행위

1)·2) (생 략) 나.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가
기관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탁ㆍ
위탁거래감독관에게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가입·활
<u>동</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수탁·위탁거래감독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
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
기관에 수탁 · 위탁거래감독관
<u>을 둔다.</u>
② 수탁ㆍ위탁거래감독관은 직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 제 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 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 · 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무/	<u> </u>	알기	네 된	1	비밀싙	<u>을</u>	엄수	누하	여
야	한	다.	수택	탁 •	위탁	거	래김	감독	·관
을	コ	만	둔	경	우에.	도	또	한	같
<u>다.</u>									

- ③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나 수탁 · 위탁거래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수탁·위탁거래감독관의 자 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수탁·위탁거래감독관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 ② (생 략) | 제4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1의2. ~ 4. (생 략)

같음)
③
1. <u>제24조의4 또는 제27조의2제</u>
<u> 2항</u>
1의2. ~ 4. (현행과 같음)